

산업보건 주요뉴스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건설재해 예방 의무자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8월 4일(화),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15~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 퇴직공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저가수주 등 건설업계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내국인력 유입이 지속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일자리를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등 건설업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 상태가 계속되면 내국인력 공급(量), 특히 숙련인력(質)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청년층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진단하고,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등급의 상승과 함께 처우도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목공·철근콘크리트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부터 공공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고용·임금·품질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합리적 고용관행 확산
-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및 불법 외국인력 활용 근절

직접시공 의무 비율 준수 상태 점검, 전문인력채용지원금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능력이 높은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도입한다.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건설재해 예방책임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 조정관을 선임토록 하여 다수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게 할 예정이다.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자치단체 평가등에 반영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퇴직공제 대상자 신고 시 전자카드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의 일용근로 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를 상시적으로 연계한다. 